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2. 12 선고 2021가합519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흥섭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경재

변론 종결 2024. 10. 17.

판결 선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1)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3. 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2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 중 260,000,000원에 관한 2018. 3. 6.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 중 260,000,000원에 관한 2019. 8. 28.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5. 29. F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30.,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와 원고는 같은 날 C이 원고에게 C 소유 부선 G(2017. 9. 25. 선박명이 'H'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기선 I, 부선 J, 부선 K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 위 각 선박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67호 등으로 위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9. 12. 26. 위 부선 K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 선박임의경매절차에서 142,700,863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는 2018. 1. 29. C와 M에게 115,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8. 2. 28.,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와 M은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원고, C, M이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1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선박 구조

1) 이 사건 선박은 2017. 12. 6.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P의 과실로 인하여 인천 Q 인근 암초에 걸려 좌초(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2) 피고와 C은 2017. 12. 26. 피고가 대금 467,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여 C에 인도하되, 실패 시에는 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구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구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선박구조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한 후 2018. 3. 14.경 인천항에 입항시켜 C에 인도하였다.

다. C의 채권양도

1) C과 피고는 2018. 3. 6. C이 피고에게 C의 O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92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선박의 구조비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같은 날 O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2018. 3. 7. 위 통지가 O에 도달하였다.

2) C과 피고는 2019. 8. 28. C이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0237호 사건에 관하여 C이 P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782,341,000원 부분을 이 사건 선박의 구조비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9. 9. 2. P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P에게 도달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C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O과 P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 2채권양도계약에 따라 C의 O 및 P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에서 위 소송에 C에 대하여 승계참가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18. O과 P은 공동하여 C에게 563,398,000원, 피고에게 467,25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가합10237호).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C과 O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R은 C의 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172,683,210원 및 6,150,237원 부분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S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물상대위권자로서, T는 C의 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109,671,744원 부분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각 C에 대하여 승계참가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20. 10.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O 및 P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1,109,601,200원[= (이 사건 선박의 선체손해액 821,060,000원 + C의 영업손실금 45,373,500원 +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 및 예인비 520,568,000원) × 책임제한비율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취지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2020나10223호]. 위 항소심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C의 O에 대한 소중과 T의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은 각하한다.
2. 가. C에게 O은 P과 공동하여 지연손해금 중 76,362,364원을 지급하라.
- 나. O과 P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O은,
 - 1) R, T에게 38,609,125원을 지급하고,
 - 2) R에게 위 38,609,125원에 대한 2020.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3) T에게 위 38,609,125원에 대한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O은 S 주식회사에게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C의 O과 P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R, S 주식회사, T의 O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O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20다288436호).

마. O의 공탁

O은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8275호로 상대적 불확지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C, R, T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를 원고, V, 주식회사 W, X, R, T, S 주식회사, 유한회사 Y으로 기재하여 위 항소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서 S 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81,176,095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1, 2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O 및 P에 대한 782,34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제1, 2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제1, 2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 위 260,000,000원에 관한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2020. 10. 30. 무렵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1. 9.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서에 제1채권양도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통지서가 2020. 10.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을 당시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병합)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304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초된 이 사건 선박을 구조하지 못할 경우 C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위 '불성공 무보수'의 조건하에 이 사건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구조에 성공함으로써 C에 대한 선박구조대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 ③ 제1, 2채권양도계약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피고의 이 사건 선박구조대금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평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선박구조계약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초된 이 사건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C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이었고 C과 피고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선박구조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O 및 P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선박구조대금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채권양도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이행을 한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선박구조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1, 2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② C과 피고의 본점 소재지 및 목적사업이 다르고 C과 피고 사이에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련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여 인천항까지 예인하는 작업의 적정한 비용은 729,023,000원인 점(갑 제2호증의1 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제1, 2채권양도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민

판사김은지

판사이명은

별지

1)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7. 3. 10. '주식회사 E'로, 2017. 7. 4.

'주식회사 C'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

2) 피고는 제1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137,659,000원 부분을 2019. 8. 30. 다시 C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C로부터 양수한 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최종적으로 782,341,000원 부분이다.

3) 제2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에는 C이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0237호 사건에 관하여 C이 U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782,341,000원 부분도 함께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U는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